

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9년부터 예술인(소액)생활안정자금(융자)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① 신청자격 및 대상

- 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(유효기간 3개월 이상)
-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성년이 아닌 사람

② 대출한도

- 생활안정자금: 최고 500만 원 이내
※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승인

③ 이자금리

- 생활안정자금: 연 2.2%

④ 상환 및 거치기간

-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
-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
※ 조기상환 가능,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

⑤ 연체이율

- 대출금리에서 연체이자 3%를 가산

⑥ 신청기간

- 매월 1~10일 신청·접수 → 11~20일 심사 및 대상자 선정
→ 말일 지급(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)

오시는 길

1.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
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54 (명륜2가)

문의 및 안내

- 예술인생활안정자금사업시행TF
- 전화번호 : 02-3668-0238~9
- e-mail : artloan@kawf.kr
- 홈페이지 : www.artloan.kr

예술활동증명서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연중 상시
- 접수방법 :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
(<http://www.kawfartist.kr> 회원가입 필요)
- 문 의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
02-3668-0200, www.kawf.kr



코로나19 특별융자 생활안정자금대출

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취소, 연기되는 등
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특별융자



이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
복권기금 지원사업입니다.

01 신청자격



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

- 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예술활동증명*을 완료한 예술인 (유효기간 3개월 이상)
-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성년이 아닌 사람
-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취소, 연기된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이 감소된 예술인

* 예술활동증명, 어떻게 하나요?

Q1. 왜 예술활동증명을 해야 하나요?

- ‘예술활동증명’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.
-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‘예술인 복지법’에 따라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Q2.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?

-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, 최근 일정기간의 예술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예술 분야 : 문학, 미술(공예, 디자인 포함), 사진, 건축, 음악, 국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방송, 공연), 만화

Q3.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예술활동증명
방법 확인

자료 준비

신청
(온라인)

예술인

02 대출한도



- 최고 1천만 원 이내
- ※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승인

03 대출금리



- 연 1.2%

● 온라인 신청

경력정보 시스템 www.kawfartist.kr

- 회원가입 ▶ 본인인증 ▶ 예술활동증명 내용 입력 및 자료 첨부 ▶ 신청완료
- ※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, 예술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및 신청 지원해 드립니다.

전 화 02-3668-0200 (평일 9:00~18:00)

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소호빌딩 1층
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

분야별 예술활동증명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www.kawfartist.kr)



04 상환 및 거치기간



-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
- 비거치, 1년 거치 또는 2년 거치 중 선택
- ※ 조기상환 가능,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
- ※ 연체이율은 대출금리에서 연체이자 3%를 가산한 4.2%

05 구비서류


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택1)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금액증명원
- 가족관계증명서
- 개인정보동의서(본인 포함 제3자)



- ①~② 택 1

- ①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(확인자 및 격리대상자)
 - 코로나19 확진자: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(관련 의료기관 서류)
 - 코로나19 격리대상자: 격리통지서 사본(보건소 발행분)
- ②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(예술활동 피해 확인)
 - 계약서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

06 문의 및 안내

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사업시행TF

- 전화번호 : 02-3668-0238~9
- e-mail : artloan@kawf.kr
- 홈페이지 : www.artloan.kr

※ 코로나19 특별용자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